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마약류 의약품 처방 또는 직접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토록 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에 따라 의무 이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 1) 환자유인,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실손보험 적용 가능’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포함

나.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안 제32조)

- 1) 인터넷·SNS상 다른 의료인 신상을 공개·공유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유형으로 신설

다.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5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란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하여 허위, 과장 또는 불명확한 내용 등을 게재하여 환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제3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별표 2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1호의3	경고	30	100
--	----------------	----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56조제2항제15호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u> <u>광고”란 실손의료보험의 적용</u> <u>가능 여부 및 범위, 대상, 금액</u> <u>등에 대하여 허위, 과장 또는 불</u> <u>명확한 내용 등을 게재하여 환</u> <u>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그러한</u> <u>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u>
③ (생 략)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의 범위)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u> <u>인터넷 매체 · 사회관계망서비</u> <u>스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u> <u>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u> <u>나 공유하는 행위</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06